

■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[별지 제42호의4서식] <신설 2026. 1. 23.>

디지털의료·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대행기관 지정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90일
신청인	명칭	법인등록번호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	소재지	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	
	대표자		
업무범위			

「디지털의료제품법」 제3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디지털 의료·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제4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: 식품의약품안전처